# 변경대비표(ETF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거래 상대방 추가	투자 대상자산	취득 한도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 TIGERCD 금리투자 KIS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CD- 파생형)(합성)	0	-	0	0	ı	8)
2	미래에셋 TIGERKOFR 금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혼합- 파생형)(합성)	0	-	-	0	-	8)
3	미래에셋 TIGERS&P 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 파생형)(합성)	0	-	0	-	-	6), 7)
4	미래에셋 TIGER 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 파생형)(합성)	0	-	0	-	-	-
5	미래에셋 TIGER 모닝스타글로벌 4 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 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	0	-	0	0	0	7), 8)
6	미래에셋 TIGER 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 주식-파생형)(합성 H)	0	-	0	-	-	-
7	미래에셋 TIGER 차이나 HSCEI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주 2)	-	0	0	8)
8	미래에셋 TIGER200IT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0	0	7), 8)
9	미래에셋 TIGER200 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0	0	7), 8)
10	미래에셋 TIGER2 차전지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0	7), 8)
11	미래에셋 TIGERKRX2 차전지 K-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-	7), 8)
12	미래에셋 TIGERKRXBBIGK-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-	7), 8)
13	미래에셋 TIGERKRX 바이오 K-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-	7), 8)
14	미래에셋 TIGERKRX 인터넷 K-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-	7), 8)
15	미래에셋 TIGERMSCIKOREATotal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0	7), 8)
16	미래에셋 TIGERMSCIUS 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(파생형)(합성 H)	-	주 1)	0	0	0	7), 8)
17	미래에셋 TIGERS&P500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 파생형)(합성 H)	-	-	-	0	0	7), 8)
18	미래에셋 TIGER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=	-	-	0	0	7), 8)
19	미래에셋 TIGER 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0	0	7), 8)
20	미래에셋 TIGER 글로벌클라우드컴퓨팅 INDXX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(주식-파생형)	-	-	-	0	-	7), 8)
21	미래에셋 TIGER 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0	0	7), 8)
22	미래에셋 TIGER 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-	-	-	0	0	8)
23	미래에셋 TIGER 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-	-	-	0	0	8)
24	미래에셋 TIGER 미국다우존스 3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-	-	0	0	8)
25	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 파생형)	-	-	-	0	0	8)

26	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선물인버스 2X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				0		
26	달러-파생형)	-	-	-	0	-	-
27	미래에셋 TIGER 미국채 10 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-	-	-	0	0	7), 8)
28	미래에셋 TIGER 미국테크 TOP10 INDXX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-	8)
29	미래에셋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				0		7) 0)
29	(주식)	-	-	-	U	-	7), 8)
30	미래에셋 TIGER 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0	7), 8)
31	미래에셋 TIGER 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0	0	7), 8)
32	미래에셋 TIGER 여행레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0	8)
33	미래에셋 TIGER 유로스탁스 5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			0	0		
33	파생형)(합성 H)	-	-		O	-	-
34	미래에셋 TIGER 일본니케이 225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-	-	0	0	7), 8)
35	미래에셋 TIGER 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-	-	1	0	0	8)
36	미래에셋 TIGER 차이나 A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		주 1)		0	0	0)
30	파생재간접형)(합성)	1	十 リ	ı	)	U	8)
37	미래에셋 TIGER 차이나 A 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혼합-				0	0	0)
37	파생형)(합성)	-	=	1	0	U	8)
38	미래에셋 TIGER 차이나항셍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1	0	-	7), 8)
39	미래에셋 TIGER 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0	0	8)
40	미래에셋 TIGER 코스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0	8)
41	미래에셋 TIGER 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1)	-	0	0	6), 7), 8)
42	미래에셋 TIGER 화장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0	0	7), 8)

#### 2. 변경 사항:

- 1)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
- 2) 투자대상자산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 변경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7) 법 개정사항 반영
- 8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-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3월 31일 (금)
- 4. 변경 내용:
  - 1)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추가
    - 미래에셋TIGERCD금리투자KIS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CD-파생형)(합성)

#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
(1) 투자전략	<생략> <mark>&lt;추가&gt;</mark>	<생략> <mark>미래에셋증권(AA, 2023.02.16), 한화</mark>
(운용전략 및		투자증권(AA-, 2023.02.17), 유안타증권(AA-,
투자방침)		2023.02.20)

#### - 미래에셋TIGERKOFR금리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(합성)

#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
(1) 투자전략	<생략> <mark>&lt;추가&gt;</mark>	<생략> <u>한화투자증권(AA-, 2023.02.17)</u>
(운용전략 및		
투자방침)		

- 미래에셋TIGERS&P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-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-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-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-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(합성)

#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	-스왑계약 거래상대방
(1) 투자전략	<생략> <mark>&lt;추가&gt;</mark>	<생략> <u>미래에셋증권(AA, 2023.02.16)</u>
(운용전략 및		
투자방침)		

#### 2) 투자대상자산 변경

주1)

####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
대상자산 등)	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	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
	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	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
	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	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	1. ~2. <생략>	1. ~2. <생략>
	3. <신설>	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
		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
		<u>다.)</u>

(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
3	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	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
<u>-</u>	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	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
<u> </u>	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	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1	1. ~2. <생략>	1. ~2. <생략>
<u> </u>	3. <신설>	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
		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
		<u>다.)</u>
2	4. 제 1 호 <u><b>및 제 2 호</b></u>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	4. 제1호 <u><b>내지 제3호</b></u>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 <u>, <b>&lt;신</b></u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</b>
투자대상	<u>설&gt;</u> ]	조건부매수]
	<생략>	<생략>
	<u>&lt;신설&gt;</u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
		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
		<u>함.</u>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 <u>, <b>&lt;신</b></u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</b>
	<u>설&gt;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	<b>조건부매수</b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
	<생략>	<생략>
	<u>&lt;신설&gt;</u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
		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
		함 <u>.</u>

## 주2)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
대상자산 등)	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권	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
	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	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
	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	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
	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	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
	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	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
	- 법 <u>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</u> 의 규정에 의한	- 법 <u>제5조제1항 및 제2항</u> 의 규정에 의한 <u>장내</u>
	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	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 채권·
	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	통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
	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생	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
	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	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.
	다. 이하 "파생상품"이라 한다)	이하 " <u>장내</u> 파생상품"이라 한다)

		T
제 16 조(투자	4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	4. <u>장내</u>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
대상자산 취득	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%를	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
한도)	초과할 수 있다.	10%를 초과할 수 있다.
제 17 조 (운용	7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	<u>&lt;삭제&gt;</u>
및 투자 제한)	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	
	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
	8.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	
	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	
	하는 행위	
제 18 조 (한도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
및 제한의 예	불가피하게 제 16 조제 4 호 내지 제 7 호, <b>제 17</b>	불가피하게 제 16 조제 4 호 내지 제 7 호, <b>제 17</b>
외)	조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	조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
	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	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
	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	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
	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	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
	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	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
	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	③ 제 17 조제 2 호, 제 3 호가목, 제 5 호 <b>내지 제</b>	③ 제 17 조제 2 호, 제 3 호가목, 제 5 호 <b>및 제 6</b>
	<u>7 호</u> 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	<u>호</u> 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
	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	④ 제 17 조 <b>제 9 호 및 제 10 호</b> 의 규정은 지수	④ 제17조 <u>제<b>7호 및 제8호</b></u> 의 규정은 지수산출
	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	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
	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	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
	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 I I E O I]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	[파생상품]	[ <u>장내</u> 파생상품]
투자대상	법 <b>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</b> 의 규정에 의한	법 <u>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</u> 의 규정에 의한 <u>장</u>
	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	<b>내</b> 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
	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	통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
	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생	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통화관련장내파
	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합니다)	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)
	(위험평가액 기준 10% 초과가능)	(위험평가액 기준 10% 초과가능)
제 2 부. 8. 나.	5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	<삭제>
투자제한	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	
	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
	6.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	
	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	
	하는 행위	

#### 3)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
- 미래에셋TIGERCD금리투자KIS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CD-파생형)(합성)

####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6 조(투자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b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</b>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
대상자산 취득	<u>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한다.	50% 초과로 한다. 다만, 양도성예금증서 관련
한도)	다만,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	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
	는 <b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</b> 투자신탁 자산총	50% 초과로 한다.
	액의 50% 초과로 한다.	

#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	[파생상품] 투자비율	[파생상품] 투자비율
투자대상	<b>위험평가액 기준</b> 50% 초과	50% 초과

- 미래에셋TIGERS&P글로벌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-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-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-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-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
####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 16 조(투자	1. 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b>투자에 따른</b>	1. 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
대상자산 취득	<u>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	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
한도)	과하는 것으로 한다.	다만,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
	다만,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	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
	투자는 <b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</b> 투자신탁 자	것으로 한다.
	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	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	[파생상품] 투자비율	[파생상품] 투자비율
투자대상	(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합쳐) <b>위험평가</b>	(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합쳐) 투자신탁
	<b>액이</b> 투자신탁 자산총액 60% 초과	자산총액60% 초과

## - 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(파생형)(합성 H)

##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6 조(투자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b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</b>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
대상자산 취득	<b>액이</b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	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부동산을
한도)	으로 한다. 다만,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	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
	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b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</b>	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
	<u>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	
	로 한다.	

## 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	[파생상품] 투자비율	[파생상품] 투자비율
투자대상	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초과	60% 초과

####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		총보수· 비용(피투자집합투자
비용>	<u> </u>	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	<u>-</u>	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
제 3 부. 집합투 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 에 관한 사항	<u>-</u>	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제 5 부. 4. 가.		
이해관계인과의	<u>-</u>	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
거래내역		

##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교트먼		변경 후	변경 전(0/)	변경 휴///
펀드명		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TIGER200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27.45	<u>26.85</u>
미래에셋TIGER200중공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<u>37.65</u>	<u>37.21</u>
미래에셋TIGER2차전지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8.48	41.83
미래에셋TIGERMSCIKOREA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3.88	22.6
미래에셋TIGER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(파생형)(합성 H)	1	1	32.09	31.46
미래에셋TIGERS&P5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	1	1	40.04	44.20
형)(합성 H)	I	1	40.94	<u>44.38</u>
미래에셋TIGER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25.62	<u>25.16</u>
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0.53	19.81
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3.19	24.35
미래에셋TIGER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6	6	0.12	<u>0.19</u>
미래에셋TIGER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6	6	0.08	0.12
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	2	2	20.56	24.70
식-파생형)(합성 H)	2	2	20.56	<u>24.78</u>
미래에셋TIGER미국다우존스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2	2	20.39	20.26
미래에셋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	4	4		0.72
형)	4	4	=	<u>8.73</u>
미래에셋TIGER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4	4	9.46	9.23
미래에셋TIGER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<u>36.17</u>	<u>37.16</u>
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<u>32.56</u>	<u>29.44</u>
미래에셋TIGER여행레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5.22	34.54
미래에셋TIGER일본니케이225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2	2	18.93	22.28
미래에셋TIGER중장기국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	5	5	3.08	<u>4.36</u>
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재간	1	1	41.00	20.44
접형)(합성)	l	1	<u>41.86</u>	<u>39.44</u>
미래에셋TIGER차이나A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(합	2	2	20.02	10.47
성)	2	2	20.02	<u>19.47</u>
미래에셋TIGER차이나HSCE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2	2	18.6	23.43
미래에셋TIGER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3.56	22.38
미래에셋TIGER코스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2	2	22.91	22.19
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2.71	29.68
미래에셋TIGER화장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1	1	33.4	<u>32.5</u>

## 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제2조(용어의 정	<신설>	-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라 함은 법 시행령
의)		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
융투자상품)		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
		니한다.

## 7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
지시 등)	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	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
시시 등)		
	<b>투자신탁재산으로</b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	그 <b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b> 그 이행책임
	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	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
	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	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
	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		<u>&lt;삭제&gt;</u>
자산 등)	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	
	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mark>	
	<생략>	
제17조(운용 및	2. <생략>	2. <생략>
투자 제한)	나. 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mark>	나. <u>&lt;<b>삭제&gt;</b></u>
	<u>또는</u>	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mark>	
	<b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b> , <생략>	
제42조(집합투자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
업자 및 신탁업	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	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
자의 변경)	<u>한다.</u>	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
		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
		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
	②~③ <생략>	②~③ <생략>
	<신설>	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
		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
		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
		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

	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
	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
	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
	청구할 수 있다.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	-채권	<삭제>
8. 가. 투자대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mark>	
상	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mark>	
	<생략>	
제2부 8. 나. 투	-동일종목투자 (예외)	-동일종목투자 (예외)
자제한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
	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	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
	투자할 수 있다.	투자할 수 있다.
	나. <중략> <b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b>	나. <u>&lt;<b>삭제&gt;</b></u>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mark>	
	<b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b> , <생략>	

## 8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 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
회사의 개요	주요 이해관계인 현황	주요 이해관계인 현황
	- 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	<삭제>
	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
제4부. 4.	회사명: <b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b> ㈜	회사명: <b>한국펀드파트너스</b> ㈜
일반사무관리회		
사에 관한 사항		

<sup>\*</sup>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## 미래에셋자산운용㈜